속초교동 블루핀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년 06월 19일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등의 판단기준일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기 당첨자실, 청약통장의 기입(가액, 주택소유, 기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음)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단 각 각 적용함).
※ 전매심사 및 입주자로 확정된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 직접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사항 및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및 확인해서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공급되는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주택법 제10조의 제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대상이 아니라 주택청약자격, 제6항제한,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 건축디자인과 – 21388호(2017.05.1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대장2017 – 건축디자인과 – 신축허가 – 16)
- ※ 공급위치 : 강원도 속초시 교동 658-42 ※ 건축개요 : B1~20F / 도시형 생활주택 235세대 / 오피스텔 29실 / 총 263가구
- ※ 대지면적 : 1,083.00㎡ ※ 건축물 연면적 : 9,384.14㎡(도시형생활주택9,217.81㎡/오피스텔1,166.33㎡)
- ※ 공급규모 : 도시형생활주택 235세대 (지상4층~지상20층)
- ※ 건축물의용도 : 지하 1층(기계,전기실,관리사무소), 지상 1층(로비,홀,경비실,주차장), 지상 2~3층(오피스텔), 지상 4~19층(도시형생활주택), 지상 20층(도시형생활주택,주민공동시설)
- ※ 주차대수 : 도시형생활주택 182대 / 오피스텔 22대 / 총 204대
- ※ 분양면적표

[단위 : ㎡]

구분	주택형	공급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입주예정시기
			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주차장면적	합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도시형생활주택	15A	119	15.07	11.95	27.02	1.40	0.45	28.87	3.24		2019년 04월
	15B	34	15.07	11.95	27.02	1.40	0.45	28.87	3.24		
	24A	49	24.88	18.61	43.49	2.11	0.75	46.35	5.35		
	24B	33	24.88	18.61	43.49	2.11	0.75	46.35	5.35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축주택 및 키팔로그/홈보재무팀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층	호	공급세대수	세대별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소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17.06.26	2017.09.20	2018.01.22	2018.04.20	2018.07.20	2018.10.22	2019.01.21	
15A	4	7	8	8,115,270	84,784,730	92,900,000	5,000,000	4,290,000	9,290,000	9,290,000	9,290,000	9,290,000	9,290,000	9,290,000	27,870,000
	5~9	2~	35	8,289,980	86,610,020	94,900,000	5,000,000	4,490,000	9,490,000	9,490,000	9,490,000	9,490,000	9,490,000	9,490,000	28,470,000
	10~14	8	35	8,377,335	87,522,665	95,900,000	5,000,000	4,590,000	9,590,000	9,590,000	9,590,000	9,590,000	9,590,000	9,590,000	28,770,000
	15~20		42	8,464,690	88,435,310	96,900,000	5,000,000	4,690,000	9,690,000	9,690,000	9,690,000	9,690,000	9,690,000	9,690,000	29,070,000
15B	4	1	1	8,289,980	86,610,020	94,900,000	5,000,000	4,490,000	9,490,000	9,490,000	9,490,000	9,490,000	9,490,000	9,490,000	28,470,000
	5~9		5	8,464,690	88,435,310	96,900,000	5,000,000	4,690,000	9,690,000	9,690,000	9,690,000	9,690,000	9,690,000	9,690,000	29,070,000
	10~14		5	8,552,045	89,347,955	97,900,000	5,000,000	4,790,000	9,790,000	9,790,000	9,790,000	9,790,000	9,790,000	9,790,000	29,370,000
	15~20		6	8,639,399	90,260,601	98,900,000	5,000,000	4,890,000	9,890,000	9,890,000	9,890,000	9,890,000	9,890,000	9,890,000	29,670,000
24A	4	9	1	8,377,335	87,522,665	95,900,000	5,000,000	4,590,000	9,590,000	9,590,000	9,590,000	9,590,000	9,590,000	9,590,000	28,770,000
	5~9		5	8,552,045	89,347,955	97,900,000	5,000,000	4,790,000	9,790,000	9,790,000	9,790,000	9,790,000	9,790,000	9,790,000	29,370,000
	10~14		5	8,639,399	90,260,601	98,900,000	5,000,000	4,890,000	9,890,000	9,890,000	9,890,000	9,890,000	9,890,000	9,890,000	29,670,000
	15~20		6	8,726,754	91,173,246	99,900,000	5,000,000	4,990,000	9,990,000	9,990,000	9,990,000	9,990,000	9,990,000	9,990,000	29,970,000
	4	11~13	3	10,561,207	110,338,793	120,900,000	5,000,000	7,090,000	12,090,000	12,090,000	12,090,000	12,090,000	12,090,000	12,090,000	36,270,000
	5~9		15	10,779,584	112,620,406	123,400,000	5,000,000	7,340,000	12,340,000	12,340,000	12,340,000	12,340,000	12,340,000	12,340,000	37,020,000
	10~14		15	10,866,949	113,533,051	124,400,000	5,000,000	7,440,000	12,440,000	12,440,000	12,440,000	12,440,000	12,440,000	12,440,000	37,320,000
	15~20		16	10,954,304	114,445,696	125,400,000	5,000,000	7,540,000	12,540,000	12,540,000	12,540,000	12,540,000	12,540,000	12,540,000	37,620,000
24B	4	1	1	10,735,917	112,164,083	122,900,000	5,000,000	7,290,000	12,290,000	12,290,000	12,290,000	12,290,000	12,290,000	12,290,000	36,870,000
	5~9		5	11,129,014	116,270,986	127,400,000	5,000,000	7,740,000	12,740,000	12,740,000	12,740,000	12,740,000	12,740,000	12,740,000	38,220,000
	10~14		5	11,216,369	117,183,631	128,400,000	5,000,000	7,840,000	12,840,000	12,840,000	12,840,000	12,840,000	12,840,000	12,840,000	38,520,000
	15~20		6	11,303,724	118,096,276	129,400,000	5,000,000	7,940,000	12,940,000	12,940,000	12,940,000	12,940,000	12,940,000	12,940,000	38,820,000
	4	14	1	10,648,562	111,251,438	121,900,000	5,000,000	7,190,000	12,190,000	12,190,000	12,190,000	12,190,000	12,190,000	12,190,000	36,570,000
	5~9		5	10,866,949	113,533,051	124,400,000	5,000,000	7,440,000	12,440,000	12,440,000	12,440,000	12,440,000	12,440,000	12,440,000	37,320,000
	10~14		5	11,041,659	115,358,341	126,400,000	5,000,000	7,640,000	12,640,000	12,640,000	12,640,000	12,640,000	12,640,000	12,640,000	37,920,000
	15~20		6	11,129,014	116,270,986	127,400,000	5,000,000	7,740,000	12,740,000	12,740,000	12,740,000	12,740,000	12,740,000	12,740,000	38,220,000

■ 공통사항

- 면적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모두 미터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09.4.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대문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길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항에 의거하여 서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시장에 상응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제항, 제16조제2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며, 전매행위는 제한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시행령 제10조 제항에 의거하여 상기 공급금액은 당사에서 총 구조 등을 감안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동주택의 분양층에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층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해 사후공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은 실제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장의 정차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차 등으로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개인 토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중 90%는 사용승인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예정 일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함) ※ 본 분양주택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 이전 공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의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시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15A, 24A 타입에 한하여 설치되고 또한, 24B 타입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키팔로그, 분양상담 등을 통해 저이정을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도시형생활주택은 외관의 통일성 및 소방주택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일괄 발코니확장을 적용하였으며, 발코니확장비용은 무료입니다. ※ 상기 공급내대의 청약잔수는 호별 구분 없이 접수를 받고 호수를 추첨하여 각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공급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과 승강기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합니다.(자주식 6대, 기계식 196대)의 오피스텔과 도형시설주택의 주차대수 포함입니다.) ※ 전매심정 및 건축주택 분양 심점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청약 안내

■ 청약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7.06.19)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1세대 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및 법인 – 기주자여 및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기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 – 청약신청은 만당 1건 신청 가능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청약당첨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일정 및 당첨자발표

구분	일정	장소
청약일시	2017년 06월 26일(목)	– 당사 견본주택 방문 청약(접수시간 : 10:00~14:00)
당첨자 발표	2017년 06월 26일(목)	– 당사 견본주택 (추첨시간: 14:00~16:00 / 현물마감시간: 16:00 이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함 – 당첨자 확인 시 당첨서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개별통보는 없음) –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이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 있음	

■ 청약신청금 및 납부계좌

구분	청약신청금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납부방법
도시형생활주택	100만원	신한은행	100-032-197399	대한토지신탁(주)	청약자명으로 무통장 입금

- 상기 계좌 입금 외에는 어떠한 형태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타인명의의 입금은 일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청약금 납입 금융기관 무통장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명의만큼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분은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당사에서 선착순으로 우선 순위 계약을 진행합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 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금 환불

- 환불기간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7영업일 이후인, 토 ·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환불방법
  - 청약신청금 환불은 금융문실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시 제출한 청약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처리합니다. (환불계좌 오류, 환불서류 미비 등 승금불능 사유 발생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약금은 일괄 환불되고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 바랍니다.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방법

-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구분	내 용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1.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2. 본인도장(또는 사명 :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3. 본인 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조경체류도, 사증, 외국인 등록증 등 포함) 4. 청약 신청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5.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 명의)
제3자 대리신청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지정 제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1. 청약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2. 청약자 인감증명서 1통 (모든 : 청약 신청일) 단, 본인청약자 방금용 인감증명서에 한 함 3. 청약자 인감증명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 제출 생략) 4. 청약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장 신청서 접수장소 비치) 5. 대리인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법인	1. 청약신청서보증증보관에 비치) 2.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3. 사업자등록증 4. 청약신청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5.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법인명의) 6. 법인대표자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함니다. ※ 동일인의 계좌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춰 준비하시기 한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계약자 성명 및 층 · 호수를 기재하여 무통장입금하여야 합니다.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부의 분양보증 책임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에 입의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위 청약신청금 환불안내를 숙지하시면 바르게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수분양권 및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자격 후 라고 계약하는 및 과불조치 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변의 신축되는 인한 건축시방 인근시설물의 변경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층 ·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경,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시설물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이의만 인정하지 않으며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부터 6항을 준수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공기관 후에는 취소사정등을 할 수 없습니다.

Ⅲ 계약안내

■ 계약기간

구분	일정	장소
계약기간	2017년 06월 26일(금) 13:00 ~ 18:00	당사 견본주택(주소 :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621-14)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00-032-197424	대한토지신탁(주)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요망 (예 : 101호 계약자 홍길동 →101홍길동)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1.청약신청 접수증 2.계약자 인감도장 3.계약자 인감증명서1통 4.계약자 주민등록등본 1통 5.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등) 6.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6.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장) 1통. (건설주택에 양식비치) 2.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3.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4.대리인의 도장
법인	1.청약신청서 접수증 2.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법인등기부등본 1통 5.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6.법인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사본 1통 (제3자로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7.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이내 발행분에 한함니다. ※ 동일인의 계좌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춰 준비하시기 한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시 유의사항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계약자 성명 및 층 · 호수를 기재하여 무통장입금하여야 합니다.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부의 분양보증 책임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에 입의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위 청약신청금 환불안내를 숙지하시면 바르게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수분양권 및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자격 후 라고 계약하는 및 과불조치 됩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변의 신축되는 인한 건축시방 인근시설물의 변경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층 ·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경,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시설물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이의만 인정하지 않으며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부터 6항을 준수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공기관 후에는 취소사정등을 할 수 없습니다.

Ⅳ 기타 유의사항

■ 중도금대출

-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실입주자정일의 최초일 전일까지 분양사업자가 부담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 관련 세무업정 및 내용은 당사 분양사업장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정책은 정책주택분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당다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하한 제항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지기 제정 외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관련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이와 하여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복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이명도 및 외국인의 경우 청약 및 계약은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오니 계약자의 책임으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분양대금을 지기 제납하여야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준공예정일 : 2019년 03월 예정

■ 입주예정일 : 2019년 0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셔야합니다. 이때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일 약1~2개월 전에 특정장치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유의사항

(1)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이하 "견본주택"이라 함)은 존치기간 만료 또는 체한 여건에 의하여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재 등을 철경, 보존 예정임니다. (2) 견본주택 내에 사용되는 제품 및 마감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모델 단종 및 변경 등의 사정에 따라 현장사정 및 동일 등등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내에 사용되어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공동부분의 시설물(공동제단,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입주위치, 부대복리시설 등은 건축허가변경도서에 준하여, 이로 인해 공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이미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이 현격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상호 시 구조 등의 단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및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공동 영향평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급안내문 및 키팔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현장은 반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홈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개약자는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6) 시설 및 계획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단체더미, 무등산장 등는 공공자와 무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7) 대출신청지의 경우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인지대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공공기재 신용불량, 총 무재상행비 등이기 등 신청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사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자는 중도금 납부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8) 본 건축물의 구조 및 성능계획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자가 인하가 변경을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건축물 외관, 단지경계, 창수 변동, 외부세탁장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 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단지조경 및 세부 시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대관협의 등에 따라 수종구격, 수량 등) 및 입주 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이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따라 조경설계는 포장 및 조경시설물 등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의 처리에 따른 소유기간으로 인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계인정보 요구 시 '시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전 및 입주 후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세대 간 벽체에 소음유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세대,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실내온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해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거기준 상이하므로 계약 세대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세대별 경계벽은 벽체의 자음 구조 인정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세대 간 벽체에 소음유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세대,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실내온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해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거기준 상이하므로 계약 세대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견본주택 설치된 내 · 외부창호는 인테리어 및 세대 상태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17) 견본주택 및 홈보물 인쇄물에는 분양가 포함목록과 전시품 등이 홈보의 시공 및 표현하기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 등 일부는 설치되지 않고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18)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도조정기, 비닥배수구, 배수관 조정기의 제품사양과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9)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 외부창호는 인테리어 및 시공 여건, 성능, 기능, 입면 개선, 품질 시험결과 등에 따라 위치 두께, 색상, 크기, 개구부 위치, 규격, 재질, 형태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욕실에 설치되는 세면대, 양변기, 수전 유리파티션 등의 제품은 견본주택에 설치 또는 분양자료에 표현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1) 세대별 경계벽은 벽체의 자음 구조 인정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세대 간 벽체에 소음유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세대,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22) 실내온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해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거기준 상이하므로 계약 세대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세대 내 보일러 및 실외기 설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4)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허가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조합과 시행사, 시공사에 위탁한다. (25) 도시형생활주택의 발코니 확장부분에는 세대별 조건에 따라 확장하여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보기에 깨끗 상태한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26) 입주세대는 공사 시 발생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일자하시기 바랍니다. (27) 계약 당일부터 입주 시점까지일 이후 관리비 및 공공요금 일체 및 제세공과금 일체 등 모든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주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28) 대출 관련 계약 및 계약은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